

제안 번호	제 72 호
의결 년월일	1996. . . . (제 회)

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지정의건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6. 4.10.

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지정의견

제안 이유	72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6. 4. 10

제출자 : 서산시장

1. 제안이유

서산도시계획변경(재정비) 결정사항이 지적고시 완료('95.5.26 서산시 고시 제95-23호)됨에 따라 동지역의 도시계획 면적이 11.925㎢에서 37.094㎢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, 서산시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

읍·면·동	대 상 지 역	면 적	비 고
부춘동	읍내동 전지역, 갈산동 일부 도시 계획구역	37.094㎢	읍내동, 동문동 전지역과 은석동, 잠흥동 석림동, 석남동 예천동 일부 도시계획구역 11.925㎢에서 25.169㎢증가
동문동	동문동, 은석동, 잠흥동 전지역		
환성동	동문동 전지역		
수석동	수석동, 석림동 전지역		
석남동	석남동 전지역 예천동, 죽성동, 양대동 일부 도시 계획구역		
오산동	오남동 전지역, 장동 일부 도시계획 구역		

3. 참고사항

○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

과세대상별	과세 기준일	납 기	비 고
토 지	매년 6월 1일	10월 16일 ~ 10월 31일	
건축물	매년 5월 1일	6월 16일 ~ 6월 30일	

○ 세 율

- 토지,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의 2/1000

○ 부과대상의 범위

- 건축물 :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

- 토 지 :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

○ 과세표준

- 건축물 : 지방세법 제234조의 15

- 건축물 :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

○ 도시계획세 부과(예상)액 대비표

붙임

[참고]

도시계획세 부과(예상)액

(단위 : 건, 천원)

읍.면.동	'95년 부과액				'96년 부과예상액			
	건 물 분		토 지 분		건 물 분		토 지 분	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계	12,890	571,188	11,644	814,928	15,380	598,188 (+4.73%)	12,074	817,872 (+0.36%)
대 산 읍	2,096	269,017	2,085	181,203	2,096	269,017	2,085	181,260
지 곡 면	262	2,156	249	735	262	2,156	249	735
운 산 면	298	6,326	241	3,118	298	6,326	241	3,118
해 미 면	855	15,906	610	13,977	855	15,906	610	13,977
부 춘 동	2,454	82,954	2,103	182,000	2,474	83,954	2,153	183,100
동 문 동	3,310	71,301	3,229	214,902	3,390	72,301	3,299	215,002
활 성 동	1,548	76,934	1,163	164,537	1,548	76,934	1,163	164,548
수 석 동	1,207	26,684	941	36,518	2,277	38,684	1,041	37,223
석 남 동	860	19,910	961	17,177	2,060	31,910	1,161	18,079
오 산 동			62	761	120	1,000	72	830

심 사 보 고 서

【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지정의 건】

1996. 4. 15

총 무 위 원 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 일자 : 1996. 4. 10
- 나. 제출 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 일자 : 1996. 4. 10
- 라. 상정 일자 : 1996. 4. 15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세무과장 유제동)

가. 제안이유

서산도시계획변경(재정비) 결정사항이 지적고시 완료('95.5.26 서산시 고시 제95-23호)됨에 따라 동지역의 도시계획 면적이 11.925㎢에서 37.094㎢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, 서산시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

읍.면.동	대 상 지 역	면 적	비 고
부 촌 동	읍내동 전지역, 갑산동 일부 도시계획구역	37.094㎢	읍내동, 동문동 전지역과 온석동, 잠흥동 석림동, 석남동 에천동 일부 도시계획구역 11.925㎢에서 25.169㎢ 증가
동 문 동	동문동, 온석동, 잠흥동 전지역		
활 성 동	동문동 전지역		
수 석 동	수석동, 석림동 전지역		
석 남 동	석남동 전지역 에천동, 죽성동, 양대동 일부 도시계획구역		
오 산 동	오남동 전지역, 장동 일부 도시계획 구역	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건은 서산시 도시계획지역이 재정비 완료됨에 따라 새로이 도시계획지역에 편입한 수석동 외 11개 지역 25.169㎢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
-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와 서산시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문) 농촌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발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데에도 이들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을주고 있다고 사료되는바, 이러한 지역을 제외 시킬 용의는 없는지?
- 답변) 농촌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대지나 잡종지에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, 또한 도시계획세의 부과는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.

5. 토 론

- 없었음

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